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7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강명구 · 엄태영 · 김용태
윤한홍 · 김정재 · 이성권
구자근 · 김형동 · 송언석
나경원 · 김상훈 · 조은희
성일종 의원(13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을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동지원센터에 해당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략)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⑫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u> ----- -----. ----- ----- ----- ----- ----- ----- ----- -.